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0.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제안제도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포 구민에 한정되어 있던 제안제출 자격을 '마포구 구정에 관심있는 국민'으로 변경하여 마포구와 관련하여 창의적 의견 및 고안(考案)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구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 확대
※ 기준 : 마포 구민과 마포구 공무원으로 제안자격 한정
- 상위 법령인 「공무원제안규정」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정발전에 기여한다면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제1항가목)을 삭제하여 제안 범위 확대
- 상위법(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에 따른 규정 신설
- 현시점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에 대한 '노력제안'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격려품(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근거 마련
-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3. 개정근거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145호, 2010. 5. 4.)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0. 7. 8. ~ 7. 28.) 결과 :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10. 8. 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신 · 구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공모에 응하여 구에 접수되는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견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 앞에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 또는 공무원은”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구정과 관련된 제안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안자별”을 “제안자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함.)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등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앞에 “제3장 제안의 심사 등”을 신설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
- 안건의 보완요구 및 재심사 여부
-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채택여부의 결정”을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재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택여부”를 “채택 여부”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시장 및 보상 등”을 신설한다.

제14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 ②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라 별표 1의 노력제안을 선정하고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5장 관리 및 실시 등”을 신설한다.

제19조 중 “실시여부”를 “실시 여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부상금의 지급(제15조 관련)

연 번	상 급	부상금 및 격려품
1	금 상	100만원
2	은 상	60만원
3	동 상	30만원
4	장려상	10만원
5	노력제안	5만원 상당 격려품(문화상품권 등)

[별표2]

노력제안 선정 기준(제15조 관련)

대 상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선정기준	현시점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
선정방법	위원회 의결
지급범위	위원회 개최 1회당 20건 이내
지급방법	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수령 또는 우편에 의한 등기수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민들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구민제안”과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p> <p>나. (생략)</p> <p>다. (생략)</p> <p>라. (생략)</p> <p>마. (생략)</p> <p>바. (생략)</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p> <p>.....</p> <p>.....</p> <p>.....</p> <p>.....</p> <p>.....</p> <p>.....</p> <p><u>제3조(정의)</u></p> <p>.....</p> <p>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구 정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공모에 응하여 구에 접수되는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삭 제〉</p> <p>간.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현행과 같음)</p>

<p>2. ~ 8. (생략)</p> <p>〈신 설〉</p>	<p>2. ~ 8. (현행과 같음)</p> <p>〈신 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p>
<p>제4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u>구민</u> 또는 <u>공무원</u>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4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u>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구정과 관련된 제안을</u></p>
<p>② (생 략)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u>제안자 별</u>로 분담내용과 배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u>제안자별</u></p>
<p>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u>제4조의 규정에 따라</u>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6조(제안의 접수) ① <u>제4조에 따라</u></p>
<p>② (생략)</p> <p>〈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 제6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p>
	<p>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함.)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설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p> <p>②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상 및 부상금 지급 등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신 설〉 제3장 제안의 심사 등</p> <p>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p> <p>〈신 설〉</p> <p>② (생략)</p> <p>1. 제안의 <u>채택여부</u></p> <p>2. ~ 5.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제안의 <u>채택 여부</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 제8조의2(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p> <p>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재심사 여부</p> <p>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u>채택여부</u>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채택 여부의 결정 및 재심요청)</p> <p>① <u>채택 여부</u></p>
---	---

<p>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u>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u>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 한다.</u></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u>제19조의 규정에 따라</u>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u>채택여부</u>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u>제19조에 따라</u> <u>채택 여부</u></p>
<p>제13조 (생략)</p>	<p>제4장 시상 및 보상 등</p>
<p>제1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u>1인</u>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p>	<p>제14조(인사상 특전) <u>1명</u></p>
<p>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u>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u>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p> <p>1. 금상 : 100만원 2. 은상 : 60만원</p>	<p>제15조(부상금 등 지급) ① <u>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u></p>

<p><u>3. 동상 : 30만원</u></p> <p><u>4. 장려상 : 10만원</u></p> <p><u>(2)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u></p>	<p><u>② 위원회는 별표2에 따라 별표1의 노력제안을 선정하고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6조 ~ 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제5장 관리 및 실시 등</p>	<p>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제18조 (생략)</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u>실시여부</u>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u>실시</u> <u>여부</u></p>
<p>제20조 ~ 제23조 (생략)</p>	<p>제20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p>